



판매개시일 2025.7.1

DB손해보험 영양보험 출시!! New간편요양보험2506



우리가족을 위한 보험!!

- 간병요양진단비 1~5등급 보장
- 보장과 목적자금 준비 두가지 동시 활용 가능

플랜확대로 유병자 고객 가입 및 대상 확대

- 325간편고지플랜 도입으로 가입 대상 고객 증대
- 재가급여지원금/시설급여지원금 담보로 보장 강화(고급플랜에 한함)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 판정 시 가능

매년 최대 120,000원씩 돌려받는 세액공제

- 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한도로 12%의 세액공제 혜택!
- ※ 다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포함하며, 근로소득자에 한함.

가입안내

실속플랜 고급플랜	일반고지 325간편고지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90세, 100세만기 10년납, 20년납 30세 ~ 65세
납입주기 적용이율		월납 보장부분 - 연복리 2.75%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연령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90세	10년	30세~55세
	20년	30세~50세
100세	10년	30세~65세
	20년	30세~60세

요양진단비 최대 보장금액 안내

[단위 : 만원]

구분	담보명	기준 가입금액	최대 보장금액
요양 진단비	장기간병요양진단비(1등급)	5,000	(1등급)10,000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2,000	(2등급)5,000
	장기간병요양진단비(1~3등급)	1,000	(3등급)3,000
	장기간병요양진단비(1~4등급)	1,000	(4등급)2,000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	1,000	(5등급)1,000
	장기간병요양진단비(인지지원등급)	500	500

※ 기준가입금액 조정 시 최대 보장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내용

- **꼭 확인하세요**
*모든보험계약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하는 가입자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고지사항을 이해하고 다른 보험정책을 계약하면 보험계약이 가결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을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재판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내용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언어자료이므로 실제 계약내용을 가늠할 경우 발생하는 가입신청, 상품설명서 등 추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타 조건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배당여부

이 계약은 배당금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종류에 따라)을 한달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향적 해약 신청한 계약은 45일) 이내 해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진단금용도가 계약금의 50% 이상인 계약은 해약할 수 없으며, 청약일 한 달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발급신청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회사의 동의에 따라 다음 보험료까지 이월 중재하여야 합니다.

■ 출생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을 청탁하는 청약의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종류에 따라 계약자가 청탁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은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단행보험계약종류의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입니다. 이 장에서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이자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핵심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계약의 성립을 수락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가 계약의 성립을 수락한 후 30일 이내의 기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지급이율 또는 상환기금대출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망에 또는 매몰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지 30일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90일 이상 단행보험인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며, 회사가 승낙한 날이 전일이며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보다 보장이 시작되지만, 일관된 특약관과 동등 보장개시일은 계약종류(초록색)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득액)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1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납입할 금액이 연체 연체 중일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득액)기간(납입최고(득액)기간의 마지막 날이 납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득액)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이에 사형에 대하여 사형통지(가면 통지, 전액회상승낙)를 또는 전자인사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자(보험수급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급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납입최고(득액)기간 내의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내용

납입최고(득액)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득액)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되는 내용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경기특별자치도 823보험사)외에 의뢰하여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보험범죄를 고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or.kr) * 1888-0100 *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sucop.fs.or.kr)
* 해당 조공대상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재하는 보험(리)업종입니다.
* 해당 조공대상자는 보험사로부터는 보험계약대출금 수령이 아닌 현금출금(대출)에 한하여 중재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고급플랜, 일반고지형, 남자40세, 상해원형1급, 월납282,240, 10년납 100세만기,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Mini(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률	
1년	3,386,916	1,608,240	47.5%	1,608,240	47.5%	1,608,240	47.5%	1,608,240	47.5%	
3년	10,160,748	6,872,710	67.6%	6,872,710	67.6%	6,872,710	67.6%	6,872,710	67.6%	
5년	16,934,580	12,414,070	73.3%	12,414,070	73.3%	12,414,070	73.3%	12,414,070	73.3%	
10년	33,869,160	33,869,160	100.0%	33,869,160	100.0%	33,869,160	100.0%	33,869,160	100.0%	
30년	33,869,160	56,568,906	167.0%	56,568,906	167.0%	56,568,906	167.0%	56,568,906	167.0%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본인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상기 예상해약환급금과 환급률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이 반영된 기준이며,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은 최초발생일(납입연료 시점)로부터 해지시점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무리하면 금액입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의 월별 기준 전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의 산술평균을 의미하며, 산술평균을 한도로 합니다.
- ※ 상기 예상해약환급금은 향후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일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인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가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등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비교제출 요청 수수료 부과 적용됩니다.



동 상품은 하나은행이 판매하는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리미엄 NEW간편요양보험"입니다.
상담 및 문의전화: www.idbins.com | 고객센터 (지역번호없이) 1688-0100 | 보상접수 (지역번호없이) 1588-0100
판매처: 방카서업부 (2025년 09월), 준법감시인확인됨, 제2025-6799호 (2025.08.04~2026.08.03)

무배당 promy life

New 간편요양보험2506



함께, 약속

※ 가입플랜 안내

		실속플랜		고급플랜		
		60세이하	61~65세	60세이하	61~65세	
장기간병 요양진단비	장기간병요양진단비(1등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만원 (5,000만원~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1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100만원)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만원 (2,000만원~100만원)	500만원 (500만원~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100만원)	500만원 (500만원~100만원)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3등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만원 (1,000만원~100만원)	500만원 (500만원~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100만원)	500만원 (500만원~100만원)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4등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만원 (1,000만원~100만원)	300만원 (300만원~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100만원)	300만원 (300만원~100만원)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5등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만원 (1,000만원~100만원)	200만원 (200만원~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100만원)	200만원 (200만원~100만원)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인지지원등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인지지원 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500만원 (500만원~100만원)	200만원 (200만원~100만원)	500만원 (500만원~100만원)	200만원 (200만원~100만원)
장기요양 급여지원금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월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	50만원 (50만원~10만원)	20만원 (20만원~10만원)
	장기요양(1-5등급,인지지원등급) 복지용구급급여지원금(월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복지용구급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	10만원	10만원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지원금(월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에 한하여 보험 가입금액 지급	-	-	30만원 (30만원~10만원)	10만원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지원금(월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시설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	50만원 (50만원~10만원)	30만원 (30만원~10만원)
	장기요양(1-5등급) 방문요양급여지원금(월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	20만원 (20만원~10만원)	10만원
보험료 납입면제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 판정시				

※ 간편고지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경우 월 1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 ()의 금액은 최대, 최소 가입금액이며, ()안의 최소금액 단위로 선택가능합니다.

■ 고급플랜 일반고지형

[기준: 월납, 최저보험료, 100세만기, 단위:원]

구분	30세	40세	50세	60세
남자	215,170	282,240	370,320	488,980
여자	290,330	380,840	499,850	66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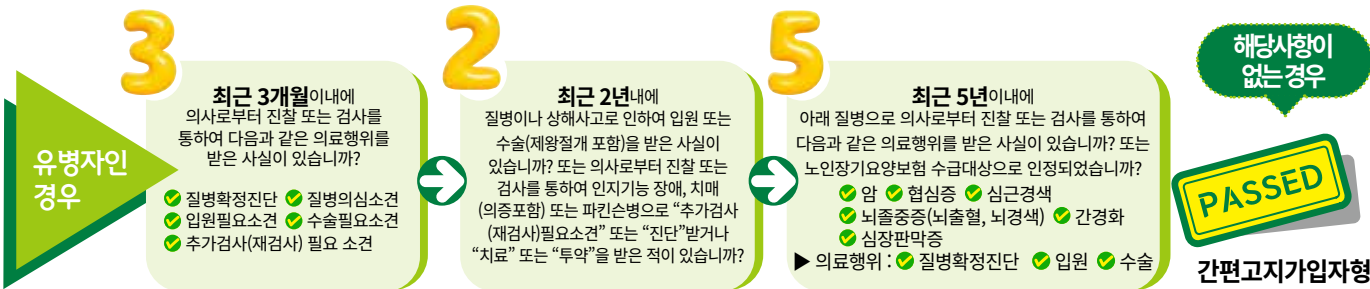
■ 고급플랜 325간편고지형

[기준: 월납, 최저보험료, 100세만기, 단위:원]

구분	30세	40세	50세	60세
남자	281,210	368,840	484,050	641,000
여자	386,020	506,380	664,830	883,660

유의사항 안내

1. 피보험자 사망시 이 계약은 소멸되며 그때까지 적립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3. 간편고지형의 경우 인수기준은 일반고지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고지형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도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